

일본 문화청, “다운로드 불법화법안” 다음국회에 제출기로

2008년 5월8일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녹음·녹화물의 다운로드¹⁾를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2008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운로드 불법화 및 녹음·녹화 보상금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 온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사적녹음녹화소위원회”는 녹음·녹화 보상금의 문제에 대한 위원간의 논의가 정리되지 않아 2008년 6월15일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국회에 법안제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문화청은 iPod 및 HDD 레코더 등 “녹음·녹화가 주된 용도인 기계중에서 기록모체를 내장한 일체형”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상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가 강력히 반발하여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한편, 다운로드위법화에 대해서는 위원간의 의견이 일치하였지만, 다운로드위법화와 보상금제도를 동시에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녹화 보상금에 대해 위원간의 합의를 얻은 후에 쌍방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빠르면 2008년 7월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조기 법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ダウンロード違法化 法案、今国会への提出断』, www.itmedia.co.jp, 2008.5.8

- 1) 일본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동영상이나 음악 등이 업로드된 사이트에서 “불법인지 알고 있으면서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동 분과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찬·반대이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에서는 불법인지 알면서 다운로드 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로 하겠다는 공식입장이 있었다.

※ 현행 일본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파일교환SW를 이용하여 업로드할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 필요하며, 허락없이 업로드 할 경우에는 송신가능화권 침해가 된다. 그러나, 업로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임의의 폴더에 저장하면 사적복제의 범위로 간주하고 있다.